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39
----------	-------

발의연월일 : 2019. 11. 1.

발의자 : 김학용 · 이장우 · 임이자

문진국 · 신보라 · 이종배

정진석 · 강효상 · 박성중

정양석 · 김동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되었음.

금번 기능조정에 따라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삭제).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사업은 해당 사업 종료시까지 종전 규정을 따라 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위탁계약 변경·해지 등의 사유로 공단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 12. (생 략)</p> <p><u>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 · 관리 및 진단 · 지원</u></p> <p>14. ~ 25.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17조(사업) ① -----.</p> <p>1. ~ 12.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14. ~ 2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